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2. 29. 신동욱 의원
- 나. 회부일자: 2022. 1. 27.
- 다. 상정일자: 2022. 2. 10.

(제26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 2. 제안이유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6조)
- 라.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 시행(안 제7조)
- 마. 보조금 지원(안 제8조)

바. 지도·감독 등(안 제9조)

사. 교육·홍보 및 표창(안 제11조~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2022. 1.21.~1.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안 제2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식품등”, “이용자”, “제공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함

○ 구청장,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에게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는 기부식품등의 모집과 제공에 있어서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음

○ 기부 식품등의 제공원칙 (안 제6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에 있어 무상제공,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제공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 지도·감독,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등(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식품등의 기부와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인건비, 기부식품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 보상 보험료 등)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을 위반하거나<sup>1)</sup>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 등이 우려될 경우 보고,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음

○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및 교육·홍보 (안 제10조~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노력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금융위기(IMF)이후 늘어난 노숙자,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입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푸드마켓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모두 있으며 물품은 지자체와 서울시가 반반 부담하며 서울시는 기부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급조절하고 배분하기 위해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를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 푸드뱅크

(2020.12월 기준)

구분	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전국	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2층	02)2077-3969
	중앙물류센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천로 745-86 (영합리 409-7)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044)867-4556
서울 (6개소)	광역	서울특별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4-7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3-1
	강서구	나눔기쁨강서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3길 59
	금천구	금천행복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B10호
	송파구	나눔과기쁨203지회 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1길 22
	강동구	글로벌푸드누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길

# 푸드마켓

(2020.12월 기준)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연락처	
서울 (30개소)	강남구	강남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02)554-1377
		강남이동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내	02)556-3266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02)427-1377
		나눔과기쁨 푸드마켓, 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5가길 4 103호	02)428-5182
	강북구	행복나눔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2층	02)991-1377
	강서구	강서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02)2635-1377
	관악구	관악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13	02)872-1377
	광진구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	02)499-1377
	구로구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02)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	02)3286-1377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02)975-1277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도봉로 170길2 도봉역 2번 출구	02)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02)2246-0036
	동작구	동작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02)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02)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	02)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0	02)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831	02)3157-1377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 43	02)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길 10 준희빌딩	02)425-1377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301호	02)981-1377
	송파구	송파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	02)2043-1377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0 양천나눔누리센터 1층	02)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02)2632-1377
	용산구	용산사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34-5	02)359-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 송인1동주민센터 4층	02)2148-4102
	중구	중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02)2297-1377
	중랑구	중랑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22	02)493-1582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02)6952-1376

○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성동푸드뱅크마켓”, “든든한끼 누리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구 제정 현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8개구 자치구 등 전국 59개 지자체<sup>2)</sup>에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분	기부 품목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
<b>가공식품</b>				
제과류	스낵, 사탕, 김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식품	민통(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즉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동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백조림 등			
<b>장류 및 식용류</b>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장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b>음료류</b>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b>산성식품</b>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후시 배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피, 김치류 등			
<b>제빙류</b>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후시 배분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사용기한에 따른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수건, 손수건, 헝거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핀,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기봉,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 기부’로 검색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식품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이웃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생활에 지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사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의 위생안전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홍보 및 협조요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